#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54 발의연월일: 2024. 11. 11

발 의 자: 박형수 · 구자근 · 엄태영

유상범 · 조정훈 · 임종득

김기현 · 이종배 · 김소희

서일준 · 김석기 · 김성원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한 행위와 관련한 등록취소와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4호).

법률 제 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 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경우 제7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 첩을 빌려준 공사업자와 이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시 · 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제7호・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	
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7.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u>자기의 성명·상호·등록증·</u>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사
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
	한 경우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4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4.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자기의 성명・상호・등록증・

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u>자</u> 5. (생략)

준 자 또는 타인의 등록증이 등록수첩을 빌려준 공사업자와 이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 거나 시공한 자

5. (현행과 같음)